

投資對象 資産稅制의 合理的 改善方向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Effective Tax Reform for Investment Assets)

-讓渡所得稅制와 金融所得稅制의 改善方向을 中心으로-

張 基 容*

(Ki Yong, Jang)

논문접수일 : 96. 10

게재확정일 : 96. 12

목 차

I. 序 論

II. 本 論

1. 주요각국의 세제비교 및 현행세제의 문제점 도출

2. 양도소득세제 및 금융소득세제의 개선방향

III. 結 論

<參考文獻>

I. 序 論

일반적으로 투자자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표 1>의 투자대상자산 중 몇 가지가 상호 결합되어 구성되며, 이러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 동우전문대학 세무회계과 조교수

그에 적용되는 課稅方法 역시 상이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되어 과세방식의 결정은 투자자의 가처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투자대상자산 중 어느 한 자산의 개별적인 稅制상의 변화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構成方式에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화는 변화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투자자 개인의 假處分所得의 增·減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대상자산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조세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투자대상 자산세제와의 衡平性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세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稅制의 實效性을 상당부분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표 1> 투자대상자산별 현행 과세제도의 내용

| 투자대상자산별 | 자산 유형 | 발생 소득 | 과세 방법 | 과 세 대 상 |
|---------|-------|-------|--------------|---|
| 부동산 등 | 자본 자산 | 양도 소득 | 분류 과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서화 및 골동품, 점포 임차권, 영업권 포함 |
| 주 식 | 자본자산 | 기타 소득 | 분리 과세 | 상장 주식은 비과세(장의 등록법인 포함) 비상장 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과세 |
| | 금융자산 | 배당소득 | 분리 및 종합과세 | -채권의 양도 소득은 비과세함 -이자 및 배당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 과세하고, 4,000만원에 미달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1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함 |
| 채 권 | 금융자산 | 이자소득 | | |
| 예 금 | 금융자산 | 이자소득 | | |

註) 綜合課稅란 해당소득을 투자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도 누진구조의 종합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고, 分類課稅란 당해소득을 투자자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며 적용되는 세율도 별도의 세율체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또한 分離課稅란 해당 소득이 종합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그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별도의 세율(종합소득세율보다는 낮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상기의 투자대상자산 중 不動產 讓渡所得과 債券 및 預金の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가 되고 있지만 上場株式(비상장주식 제외)의 讓渡所得은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상장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그동안 資本市場의 育成을 위한 政策的인 배려가 그 원인이었으나, “所得이 있는 곳에 課稅가 있다”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課稅의 公平性과 所得分配構造의 改善 그리고 株式市場의 健全한 發

展이라는 측면에서 과세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커짐으로써 課稅의 當爲性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資本利得에 대하여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사회적으로 經濟的 效率과 더불어 公平性의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과세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課稅의 先決要件인 金融實名制의 실시와 이들이외의 자산인 金融 및 資本所得資産에 대한 세제의 정비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 과세의 기반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고 또한 정부의 稅制改革에 대한 정책의지를 고려해 볼 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여러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課稅方法과 時期의 선택만을 남겨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할 때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투자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중 현재 개별적으로 상이한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는 부동산과 채권·예금(금융자산)에 대한 個別稅制의 問題點을 導出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綜合的으로 고려함으로써 不動產 讓渡所得稅制 및 金融所得稅制의 合理的인 改善方向을 제시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을 제시한 제 1장에 이어 제 2장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세제의 變遷過程을 정리한 후, 각국의 과세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現行 稅制의 問題點을 導出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대상자산별 稅制의 改善方向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研究結果를 要約하고 본 연구의 限界點 및 未來의 研究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主要各國의 稅制比較 및 現行稅制의 問題點 導出

(1) 讓渡所得稅制의 主要國別 比較 및 問題點 導出

① 讓渡所得稅制의 主要國別 比較

우리나라 讓渡所得稅制의 變遷過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解放以後 休戰前까지>

해방이후 미군정부(1945-1948)는 약 1년간 일본의 戰時稅制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그 후 2년간은 일제말기에 성립된 增稅爲主의 복잡한 稅制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稅制改革을 진행하였다. 이 때 所得稅令을 개정하여 부동산 등의 讓渡所得 課稅制度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 당시 도입된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부동산, 광업권 또는 등록선박 등의 매매·교환 또는 양도로 인하여 생긴 利益總額(損失除外)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第3種 所得¹⁾에 산입하여 1947년도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였다.

정부수립 직후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세제를 마련하여 財政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稅制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세제개혁을 추진하였다. 1949년 7월 15일에 우리나라 세법으로서 所得稅法이 처음으로 制定(法律 第33號) 公布되었다. 이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어업·광업에 관한 권리 또는 등록된 선박의 양도소득을 非課稅所得으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수립 후의 세제는 6.25동란이 일어나자 막대한 軍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戰時稅制로 전환되었다. 이 때 소득세법을 개정(1950년 12월 1일)하여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休戰 直後부터 經濟開發 5個年計劃 以前까지>

휴전 직후 정부는 戰時稅制를 平時稅制로 환원시키기 위한 稅制改革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國民所得을 기초로 한 租稅收入額의 책정과 企業所得에 대한 우대를 통한 經濟復興이 강조되었다. 이 당시 소득세법 개정(1954년 3월 31일)의 주된 내용은 所得稅를 直接稅의 중추로 할 것을 목적으로 所得稅의 體系를 比例稅率이 적용되는 分類所得稅와 累進稅率이 적용되는 綜合所得稅制로 二元化하였다. 양도소득제도 분류소득세의 일종으로 포함되어 8% - 15%의 비례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분류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一定額을 초과하는 高額所得者에게 과세되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자 1954년 10월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세제로 개편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종전 소득세의 특징이었던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二元稅制는 원칙만 잔존시킨 雜給與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雜所得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12% - 55%의 11단계 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戰時稅制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된 세제는 1957년까지 전란으로 파괴된 경제의 재건이 대체로 매듭짓게 되자 이 경제기반 위에서 經濟安定과 產

1) 第1種 所得: 法人所得 및 清算所得

第2種 所得: 公·社債, 債券 및 銀行貯金の 利子 또는 信託의 利益과 退職給與 등

第3種 所得: 第1種 所得 및 第2種 所得이외의 所得

業復興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당시 유명무실한 綜合所得稅制는 廢止(1958년 12월 29일 개정)되고 賦課徵收에 물의가 있었던 讓渡所得은 非課稅로 전환(1960년 12월 개정)되었다.

<經濟開發 5個年計劃 以後부터 1974年 稅法改正前까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라 都市化 및 産業化가 진전되고 특히 京釜高速道路의 건설 등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에 따라 地價가 급상승하고 일부지역에서는 投機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不動產投機抑制稅를 과세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67년 11월 29일 제정된 법이 不動產投機抑制에 관한 特別措置法이며, 현행 讓渡所得稅制度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이 세법은 稅收確保보다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여 地價安定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課稅對象地域은 서울特別市, 釜山市와 大統領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고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 및 도매물가상승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讓渡價額과 取得原價는 연 2회 이상 정부가 조사한 時價標準額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國·公有地, 替費地, 換地로 인하여 地目이 변경된 토지와 주한외국공관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않는 敷土와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토지 및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면세하도록 규정되었다.

<1974年 稅法改正後부터 現在까지>

不勞所得인 資產所得에 대한 重課政策과 주택 특히 아파트투기의 억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課稅對象을 일정지역의 토지에 한정하였던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97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만 적용하고(근거: 不動產投機抑制에 관한 特別措置法廢止에 관한 法律), 197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흡수되어 그 과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不動產에 대한 投機를 抑制하는 동시에 所得再分配機能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세법개정시마다 과세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投機발생시는 投機抑制機能을 강화하고 경기침체시에는 住宅景氣活性化 대책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非課稅·減免範圍는 일부 축소된 경우도 있었고 각종 정책목적 수행의 명목으로 확대된 경우도 있었으나 1988 - 1989년 중 대폭 축소되었고 서울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1975년 所得稅法·法人稅法에 흡수된 讓渡稅制의 기본골격에는 큰 변동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

| 시 기 | 변 경 내 용 | 변 경 의 배 경 |
|-----------|--|---|
| 1951.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소득 과세 제도 최초 도입 -부동산, 광업권, 선박 -세율: 5~40% 누진 세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租稅 特例法'에 의한 戰費 조달 |
| 1960.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소득 과세 제도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에 의한 명목 소득 과 세이므로 과세 부당 |
| 1968.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動産 投機 抑制稅' 창설 -서울, 부산, 고속 도로 주변 토 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價의 안정 도모 |
| 1975.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소득세' 제도 신설 -종합 소득세 도입 (양도 소득:분류 과세) -토지, 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財産 所得에 대한 適正 課稅 · 所得 再分配 機能 강화 |
| 1978.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 지역 고시 -1981. 7. 1. 전면 해제 -1983. 2. 부활(특정 지역 고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投機 및 開發 利益 환수 · 國民 經濟 秩序 정상화 |
| 1978.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를 課稅 對象에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의 現實 考慮 |
| 1979.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稅率 調整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특정 주식'을 과세 대상에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短期 保有 資産 및 未登記 轉 賣에 대한 重課 · 經濟 去來 現實 考慮 |
| 1980.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彈力 稅率 制度 도입 · '店鋪 賃借權, 營業權'을 과세 대상에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期 保有 資産과 庶民 住宅 讓渡에 대한 세부담 경감 · 經濟 去來 現實 考慮 |
| 1983. 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定 施設物 利用權'을 과세 상에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 콘도 미니엄 투기 억제 |
| 1989.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動産 過多 保有 法人의 株式 等'을 과세 대상에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動産 投機 억제 |
| 1990. 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示 地價 制度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課標의 現實化 |
| 1990.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書畫 등 및 非上場 法人의 株 式'을 과세 대상에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의 衡平 |
| 1995.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讓渡 所得 特別 控除 폐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범위 확대) · 讓渡 所得 控除 範圍 上向 조정 · 讓渡 所得 稅率 體系 下向 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融 資産과 實物 資産과의 衡平 고려 · 經濟 現實 고려 · 各種 非課稅·減免의 축소 |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土地課稅 制度가 발달된 日本·英國·臺灣과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 는 것처럼 課稅對象에 있어서 영국은 주식 등 有價證券의 양도를 포함하고 있 으며 대만은 土地만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課稅標

準의 계산과 稅率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長·短期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累進稅率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장·단기의 구분없이 比例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대만은 토지과세제도가 발달된 나라라는 점에서, 일본은 세제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 조세제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국으로 삼았다.

〈표 3〉 개인 양도소득세제의 주요국별 비교

| 구분 | 우리나라 | 일본 | 영국 | | 대만 |
|------|---|--|--|-------|--|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자본이득세 | 개발토지세 | 토지증가세 |
| 과세대상 | ①토지의 양도 ②건물의 양도 ③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 ④특정 주식의 양도 ⑤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 ⑥서화, 골동품의 양도 | ①토지의 양도 ②토지상의 권리의 양도 ③건물의 양도 | ①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 ②토지·건물·토지 등의 차용권의 양도 ③사업용 자산 등의 양도 | 토지 | 토지의 양도 |
| 과세표준 | <p>〈보유 기간 2년 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입 금액 (양도 가액) △필요 경비 -취득가액, 설비비 등 자본적 지출·양도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소득 공제 (250 만원) · 양도 소득 금액 <p>〈보유 기간 2년 미만 또는 미등기 전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입 금액 (양도 가액) △필요 경비 · 양도 소득 금액 | <p>〈장기 양도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 기간 10년 초과 · 총 수입 금액 △취득비(취득가격+개량비 등) △양도 비용 △특별 공제(1백 만엔) · 과세 장기 양도 소득 <p>〈단기 양도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 기간 10년 미만 · 총 수입 금액 △취득비(취득가격+개량비 등) △양도 비용 · 과세 단기 양도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양도)가격 △취득 가격 △자본적 지출(개량비 등) △처분 부대 비용 · 양도 이득 | 개발이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가격(양도 가격) △原初 査定 地價 (1964년 규정 지가) 또는 전회 토지증가세 산출기준의 지가 △토지 개량비용 · 토지 증가 총액 |

| 구분 | 우리나라 | 일본 | 영국 | | 대만 |
|----|--|---|---|-------|--|
|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자본이득세 | 개발토지세 | 토지증가세 |
| 세율 | ①보유 기간 2년 이상: 30-50% ②보유 기간 2년 미만: 50% ③미등기전매: 75% | <장기 양도 소득> ①4천만 π 이하: 20% ②4천만 π 초과: 8백만 π 과 장기 양도소득의 1/2을 종합 과세할 때의 稅額을 합제한 금액 <단기 양도 소득> ①단기 양도 소득 \times 40%와 ②종합 과세의 산출 세액의 110% 중 많은 금액 | ①비례 세율 30% 적용(개발 토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60%) 동일 재산에 대하여 자본 이득세와 개발 토지세가 동시에 해당되면 양도 이득 과세에서 개발 이익을 차감하여 조정함. | | ①토지 증가 총액이 원초 사정지가 또는 전회 토지증가세 산출 기준지가의 100% 미만: 40% ②100% 이상 200% 미만: 50% ③200% 이상: 60% |

② 現行 讓渡所得稅制의 問題點

주요 각국과 비교한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稅率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례세율 30% 내지 75% 수준이고, 일본은 비례세율 20% 내지 40%, 영국은 비례세율 30%(개발토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60%), 대만은 40% 내지 60%의 초과 누진세율이다. 대체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는 세제의적인 관련제도와와의 不調和 때문에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收나 地價上昇抑制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非課稅·減免 條項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규정은 40여종에 달하고 있어 과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1990~1994년 기간 중 비과세비율은 31.6%에서 51.4%에 이르고, 감면비율도 1992년 27.9%를 頂點으로 정부의 감면범위 축소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1994년 현재 18.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비율

(단위:%)

| 구 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
| 비과세 | 31.6% | 32.2% | 42.0% | 43.5% | 51.4% |
| 감 면 | 19.7% | 16.2% | 27.9% | 20.1% | 18.9% |

이러한 비과세·감면·課稅要件未達(1991년의 경우 과세요건미달은 전체 양도소득 과세대상 거래 중 44.1%에 달함)은 양도소득세를 分類課稅하는 본래의 政策的인趣旨와는 크게 相反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 나라의 양도소득과세는 기본적으로 公示地價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공시지가가 현실적인 시장가격에 많이 접근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의 시장가격에 대한 공시지가의 비율, 즉 課標現實化率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넷째, 양도소득세라 하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古書畫나 骨董品²⁾ 그리고 上場株式 등의 讓渡差益에 대해서도 과세해야만 公平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2) 金融所得稅制의 主要國別 比較 및 問題點 導出

① 金融所得稅制의 主要國別 比較

가. 우리나라 金融所得稅制의 發展過程 및 現況

95년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사채이자와 대주주가 받는 배당 소득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分離課稅하여 왔다. 과거 1960년대의 개발시대에 있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內資調達을 위해 예·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秘密保障을 해주면서까지 예금주의 비밀을 보호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2) 書畫·骨董品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시 신설된 것이나 2년간 그 시행을 유예하여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술 관련단체의 강력한 租稅抵抗에 부딪혀 199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시 그 적용시한을 다시 3년간 猶豫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李喆載, “稅法講義”, 稅經社, 1995, p. 581.).

예금주의 금융소득을 파악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

금융소득에 대한 이러한 분리과세제도는 원칙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행정면에서도 역시 간편하다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나 적은 사람에게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소득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되어 있는 應能負擔의 原則을 살리지 못하여 公平課稅를 구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표 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이전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규모(1994년)

(단위: 억원)

| 구 분 | 합 계 | 분 리 과 세 | 종 합 과 세 |
|---------|---------------------|--------------------|------------------|
| 이 자 소 득 | 176,662 (100.0%) | 175,240 (99.1%) | 1,532 (0.9%) |
| 배 당 소 득 | 14,158 (100.0%) | 8,040 (56.8%) | 6,118 (43.2%) |
| 계 | 190,930 (100.0%) | 183,280 (96.0%) | 7,650 (4.0%) |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金融實名制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자의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30여년간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非實名 金融去來 慣行은 계층간 소득 및 세부담의 불균형 심화, 음성적 자금거래의 확대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실명제는 바로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자 금융거래시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며 금융 거래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장치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실명제를 기초로 1996년부터 시행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對象者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그리고 원칙 분리과세제도하에서도 종합과세대상

이었던 비영업 대금의 이익, 비상장법인의 주주 및 상장·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은 계속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며, 국외에서 받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도 금액에 관계 없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둘째, 綜合課稅對象 金融所得의 範圍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 | |
|----|---|
| 원칙 | 부부 합산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소득 |
| 제외 |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개인 연금 저축,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자, 주식·채권의 매매 차익, 5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차익 |
| 예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우대 저축 이자는 10%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연간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함 -농·수·축협 단위 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예탁금(2천만원 이하) 이자와 출자금(1천만원 이하)의 배당은 1997년부터 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연간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함(1996년까지는 비과세) -상환 기간 5년 이상 장기 채권은 30%(10년 이상은 25%)의 세율로 분리 과세 선택 가능함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 저축은 30%의 세율로 분리 과세 선택 가능함 |

셋째,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稅額計算方法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천만원까지는 源泉徵收稅率(15%)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한다. 그러나 종합과세하는 경우의 세금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경우의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원천분리과세한다. 이렇게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준금액을 전후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받는 자가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분리과세를 받는 자보다 오히려 세후 소득이 적어지는 稅負擔의 逆進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主要各國의 金融所得稅制 比較

7. 美國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원천징수하지 않고 綜合課稅하고 있다. 다만, 예금주가 납세자번호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20%를 源泉徵收한다. 납세자는 매년 4월 25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自進申告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고용주가 보고한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 급료와 임금내용, 금융기관이 보내온 고객들의 이자지급내용,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용 등을 자료로 신고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소득세율은 15%, 28%, 31%의 3단계 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二重課稅 調整制度가 없으며,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수취배당금의 80%를 益金不算入한다. 비과세 금융상품도 존재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소액 또는 공익목적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非課稅한다.

株式讓渡差益課稅의 경우, 장기 보유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종전의 60% 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 타소득과 합산하여 15%, 28%, 31%의 3단계 세율에 따라 綜合課稅하고 있다. 長·短期 구분에 따른 저율과세는 폐지되었으나 양도차손의 通算 또는 相計의 목적상 장·단기 구분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양도차손익은 양도자산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장기 양도차익은 장기 양도차손과 먼저 상계하여 純 長期 讓渡差損益(net long-term capital gain/loss)을 산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純 短期 讓渡差損益(net short-term capital gain/loss)을 산출한 후, 순 장·단기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순 양도차손익(net capital gain/loss)을 계산한다. 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과세소득에 합산하고, 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3,000 달러(부부별도신고시 1,500 달러)를 한도로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 및 공제가 가능하며 미공제 잔액은 전액이 공제될 때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ㄴ. 日本의 경우

利子所得에 대해서는 세율 20%로 源泉分離課稅하고 있다. 300만円 한도내의 65세 이상자·모자 가정·신체장애자의 저축 및 500만円 한도내의 근로자저축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1988년 4월 1일 발효된 개정 소득세법은 소액 비과세 저축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일률 원천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동법 부칙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은 종합과세제로의 이행문제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다음 재검토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조만간 이자소득 과세방식에 대한 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配當所得에 대해서는 綜合課稅와 源泉分離課稅를 병행하고 있다. 한 종목당 10만円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는 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한 종목당 연간 10만円 초과 50만円 미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는 35%

의 원천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한 종목당 50만円 초과배당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소유주주의 경우는 종합과세되는 데 이 경우에도 배당금을 수령할 때 세율 20%로 원천징수한다. 한편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데 1,000만円 미만은 10%, 초과분은 5%를 공제한다.

有價證券讓渡差益의 경우, 개인에 대한 과세는 모든 유가증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의 26%(소득세 20%, 주민세 6%)를 원칙적으로 申告分離課稅하고 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하였던 신규 공개주식을 상장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2을 과세한다. 양도손실은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과 通算이 不可能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공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장 주식, 전환 사채 등을 증권업자에게 양도 또는 매매 위탁하는 경우에는 源泉分離課稅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분리과세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수입의 5%를 양도 차익으로 看做하여 증권회사가 소득세 2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ㄷ. 臺灣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원천징수한 후 綜合課稅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 10%, 비거주자 20%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6%~40%로서 5단계 누진세율이다. 한편 부부의 수입은 합산하여 남편의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夫婦合算制를 채택하고 있다. 비과세 한도와 대상도 존재하는 데 36만 대만달러(약 9백 만원)는 비과세하며 우편예금, 단기 채권이자는 25% 원천분리과세한다.

株式讓渡差益課稅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소득과 같이 6%-40%의 누진세율에 의하여 綜合課稅되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부터 과세해 왔다. 讓渡損失은 주식간 相計 및 기타 재산거래소득과도 상계가 가능하나 다른 유형의 소득(예:이자소득, 배당소득)과는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양도손실은 차후 3년간의 移越控除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만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시행 1년만인 1990년 3월,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증권거래 손실을 신고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1990년부터 다시 課稅를 保留키로 결정하였다. 시행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항은 ① 投資獎勵條例 閉止 措置를 취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는 점 ② 株價暴落으로 인한 투자손실 계산 및 이월공제 사항이 복잡하다는 점 등이었다.

ㄹ. 英國의 경우

이자소득은 23.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綜合課稅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25%, 40%의 2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다.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Imputation System"을

도입하고 있는 데, 법인은 배당지급시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예납하고, 개인은 수취배당액과 법인이 지급한 預納法人稅額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개인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납법인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편 법인간의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우체국 취급 재정증권이나 10,000파운드까지의 정부발행 국민저축채권 이자 및 국민저축은행에 예치된 연간 70파운드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有價證券의 讓渡所得에 대하여는 25%, 40%의 2단계 누진 세율로 종합과세하며, 재정증권 및 적격사채는 비과세한다. 자본손실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5,000파운드까지는 기초공제하며, 당해연도 자본손실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부분을 차감하여 종합과세한다. 또한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㉑. 獨逸의 경우

납세자(예금주)는 年末精算을 할 때 금융자산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이자지급과 원천징수내용을 수시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세원관리를 바탕으로 독일에서는 利子所得에 대해 원천징수한 후 綜合課稅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예금 이자의 경우 30%, 채권이자의 경우 35%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8.4%, 최고 53%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1989년 1월 1일 실시한 이후 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으로 1989년 6월 30일에 폐지한 바 있으나 1993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配當所得에 대해서도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장치도 갖고 있는 데, 일차적으로 배당할 때 배당액의 25%를 資本收益稅로 원천징수한 다음 연간 소득정산시 상기 자본수익세 해당분과 배당액의 일정비율 상당액(Tax Credit)의 합계액이 종합 소득과세액에서 공제된다.

한편 원천징수를 강화하면서 소액예금주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금융자산소득을 합쳐 연간소득이 6,100마르크(305만원) 이하인 단독소득세대와 1만 2,200마르크(610만원) 이하인 맞벌이세대는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이자금액이 10마르크 미만이거나 연 이율 0.5% 이하인 당좌예금은 예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되고 있으며 정당, 노동조합, 직능단체, *연금기관, 병원 등 법으로 정한 공익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비과세하고 있다.

有價證券의 讓渡所得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단, 유가증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할 때에는 투기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주식 및 외국에서 취득한 주식 관련 채권(전환사채, 배당부사채)의 매각으로 인한 매매차익이며 1년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에서 자본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 과표액이 연 1,000마르크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이 매매차익도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된다. 또한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 프랑스의 경우

금융자산소득은 기업의 경우 종합과세(법인세 42%)하고,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 하나를 納稅者가 選擇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5%~최고 56.8%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천분리과세세율은 일반 공사채는 25%, 기타 금융자산의 경우는 48%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종합소득세율과 원천분리과세세율의 격차가 심해 綜合申告納稅가 選好되고 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배당소득의 50%를 配當稅額控除로 인정하고 있다.

有價證券의 讓渡所得은 신고분리과세하고 있는 데, 연간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매년 공시되는 일정 금액(1989년 28만 8,400프랑:약 3,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16%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하고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지배주식 이외의 비상장주식 등은 비과세한다.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100만 프랑 이하는 0.30%, 100만 프랑 이상은 0.15%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주요 국가별 금융소득세제의 실시현황을 比較·要約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주요국별 금융소득세제의 비교

| 구 분 | 이자·배당 소득 과세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
|-----|---|--|
| 미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과세(3단계: 15%, 28%, 31%) • 원천 징수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과세 • 증권 거래세는 없음 |
| 일 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은 원천분리과세(20%) • 배당 소득 ①한 종목당 연간 10만円 이하(20% 원천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선택) ②10만円 초과 50만円 미만(35% 원천 분리 과세와 종합 과세 선택) ③50만円 초과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주주(종합 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 분리(매각액의 1%)와 신고 분리(양도차익의 26%) 중 선택 • 증권 거래 과세(0.30%) |
| 대 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과세(최저 6%~최고 40%) • 이자, 배당 모두 원천 징수(10%,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과세('89.1부터 시행하다가 상장 주식은 '91.4부터 비과세) • 증권 거래 과세(0.15%) |
| 영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2단계: 25%, 40%) • 이자 소득은 원천 징수(23.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과세 • 증권 거래에 대해 인지세 과세(0.5%) |

| 구분 | 이자·배당 소득 과세 | 주식 양도 차익 과세 |
|-----|---|---|
|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과세(최저 8.4%~최고 53%) · '93.1 원천 징수 부활(이자 30%, 배당 3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비과세 단, 취득 후 6개월 내에 양도시 과세 · 증권 거래 과세(0.25%)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소득은 종합 과세(최저 5%~최고 56.8%)와 원천 분리 과세(일반 공사채 25%, 기타 48%) 중 선택 · 배당 소득은 종합 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분리 과세(16%) · 증권거래 과세(2단계: 0.15%, 0.30%) |

② 現行 金融所得稅制의 問題點

1996년부터 시행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綜合課稅 基準金額의 適正性 문제이다.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은 금융소득만 있을 때의 所得稅 實效稅負擔率이 원천징수세율(15%)과 같아지는 수준(약 3,600만원)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1997년 이후에는 원천징수세율이 더 인하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이를 감안한다면 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綜合課稅 對象所得의 範圍와 관련된 문제이다.

5년 이상 장기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장기(10년 이상) 저축상품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위배된다. 또한 주식·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과세의 형평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綜合課稅의 單位와 관련된 문제이다.

부부단위의 종합과세는 민법상의 夫婦別算制와 상속세법상의 배우자간 贈與 등의 규정과 불일치하며, 별도의 세율적용없이 단순히 부부단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미혼자와 독신자에 비해 세제상의 불공평을 야기시킨다. 또한 자신의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형성된 배우자의 금융자산 소득을 무조건 합산과세하는 것은 實質課稅의 原則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2. 讓渡所得稅制 및 金融所得稅制의 改善方向

투자대상자산 중 주식은 다른 투자자산과는 달리 자본이득(손실)과 금융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資本資產과 金融資產의 兩面性을 갖고 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견해의 차이가 없지만,

주식에 대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손실)의 과세 방법은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영국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의 체계 내에서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제의 발전적인 관점에서 모든 개인의 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하여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 체계 안으로 수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절에서는 不動産讓渡所得稅制의 綜合課稅로의 전환을 전제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금융소득세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범위에 포함시켜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1) 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向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의 틀 속에서 별도의 세율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綜合課稅는 원천별 각종소득을 종합합산하여 여기에 각종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과세함으로써 소득세의 특징인 개인적 사정의 고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擔稅能力이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을 완전히 종합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각종 소득자료의 전산화 등 정세상 고도의 기술과 종합소득신고 등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조가 요구되는 바, 현실적인 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稅源의 脫漏를 막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소득의 원천별로 별도과세하는 分類課稅는 소득의 포착, 부과, 징수가 용이한데다 광범위하게 원천징수할 경우 세원의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소득종류별로 차별과세함으로써 所得의 源泉別로 不公平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賦稅能力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종합소득세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분류소득과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 과세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하고 있고, 종합소득 과세대상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있는 등 완전한 의미의 종합소득세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종합소득세제로 인하여 소득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累進效果가 약화되어 소득계층간의 수직적 공평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소득종류간 과세의 불공평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명실 상부한 종합소득세제의 정착은 조세부문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양도소득을 사업·근로·이자소득 등 여타 주요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과세할 수 있도록 綜合課稅로 轉換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토지·건물 등의 매매에 따른 자본이득이 사실상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의 종합과세 전환은 자본이득에 대한 重課와 소득세제의 應能負擔基調 強化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도소득을 포함한 여타의 소득(주식 및 채권의 양도차익 포함)이 종합과세체계에 수용됨으로써 명실 상부한 종합소득세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금융실명제와 不動産實名制 및 土地去來 電算網의 구축 등으로 양도소득세의 종합과세를 위한 조세환경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포함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종합과세로의 전환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金融所得稅制의 改善方向

株式과 社債는 기업의 중요한 資金調達源泉이며, 이에 대한 세제상의 불균형은 기업의 財務構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세제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改善方向을 주로 하여 금융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표 8> 및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배당소득의 課稅捕捉率과 實效稅率(effective tax rate)은 일반적으로 타소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과세소득 포착율(1983년)

(단위: 억원, %)

| 구 분 | 국민 소득(A) | 결정 소득(B) | 포착율(B/A) |
|---------|-----------|-----------|----------|
| 근로소득 | 255,875 | 191,855 | 75.0 |
| 재산소득 | 77,316 | 24,811 | 32.1 |
| 임료 | 23,722 | 2,799 | 11.8 |
| 이자 | 49,247 | 19,794 | 40.2 |
| 배당 | 4,347 | 2,218 | 51.0 |
| 사업소득 | 83,732 | - | - |
| 비농업 | 27,952 | 21,053 | 75.3 |
| 농업 | 55,780 | - | - |
| 개인소득 | 425,879 | - | - |
| (농업 제외) | (370,099) | (237,719) | (64.2) |

- 註: 1) 귀속분 제외
 2) 경영이전수입 제외
 3) IMF 추계

〈표 9〉 소득종류별 실효세율(1989년 기준)

(단위:%)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양도 소득 |
|-------|-------|-------|-------|-------|
| 3.23 | 15.9 | 9.8 | 34.1 | 25.6 |

자료 : 재정경제원

특히 이자소득과 비교해 볼 때 배당소득의 과세포착율이 더 높으며, 실효세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제상의 불균형은 주식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잇점을 상쇄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어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기로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칙적인 종합과세시행에 따라 양자간의 과세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도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綜合課稅對象의 範圍調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실효세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현재 配當所得에 대한 稅額控除方法의 개선을 들 수 있다.

1990년 말의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배당세액공제의 Gross-up 방식은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토록 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주주의 중복적인 세금부담이 완전히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귀속 법인세의 1/3만을 차감토록 한 것은 전액을 차감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稅收減少를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二重課稅調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리과세대상 소액주주들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모든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후자의 목적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자소득과의 실효세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도 獨逸과 같은 Imputation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綜合課稅 基準金額은 예상되는 원천징수 세율인하 등을 감안하여 3,000만원 수준으로 下向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夫婦合算 課稅制度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합산대상 배우자 자신의 근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자산소득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종합과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結 論

본 연구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할 때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투자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중 현재 개별적으로 상이한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는 부동산, 채권·예금에 대하여 개별세제의 측면이 아닌 투자대상자산 전체, 특히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제와 금융소득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우선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세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후, 각국의 과세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기존세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기존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投資對象 資産稅制의 改善方向을 연구하였다.

투자대상 자산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주식은 資本利得이 발생하며 이는 處分時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묶음효과(bunching effect)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부동산과 동일하지만, 주식은 자본이득의 分散實現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주식은 기업의 중요한 資金調達源泉 중의 하나로 간주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은 不勞所得으로 간주되어 重課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본이득이 발생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주식도 부동산의 경우처럼 分類課稅되어야 하지만, 주식의 성격상 그 課稅內容은 달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세율구조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累進稅率보다는 낮아야 하며, 이는 또한 金融所得에 대한 종합과세 세율과의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을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체계 내에서 다루지 않고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所得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損益通算과 損失移越의 허용여부 등 과세내용의 체계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과세로 인한 주식시장으로부터의 資金離脫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와는 별도로 주식의 配當所得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간의 實效稅率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非課稅 또는 分離課稅되는 利子所得의 範圍를 배당소득과의 형평에 맞게 調整하여야 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二重課稅의 회피를 위해 이중과세의 完全調整이 가능한 Imputation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綜合課稅 基準金額의 下向調整이 바람직하며, 夫婦合算 課稅制度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로 差等適用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과세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제도의 經濟的 效率性和 公平性이 잘 調和되어야만 그 實效性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稅政을 돌이켜 보면, 경제적효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온 바 세제내 또는 세제간의 公平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투자대상자산간의 특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 세제(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는 투자대상 자산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文獻的 考察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대상 자산세제에 대한 認知와 行態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1. 고동호, “不動產 實名制와 稅務對策”, 稅學社, 1995
2. 김광윤, “株式關聯 稅制의 改善方案에 대한 研究”, 韓國 上場會社 協議會, 1993
3. 박중구, “土地稅制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稅務學 研究, 1992
4. 변용환, “讓渡所得稅의 凍結效果에 대한 實證的 研究”, 韓國會計學會, 1992. 7
5. 선병완, “資本利得稅의 物價連動制에 관한 研究”, 韓國稅務學會, 1991
6. 오연천, “韓國 租稅論”, 博英社, 1993
7. 오재선, “資本利得課稅의 諸問題와 資本利得 課稅制度의 改善方向”, 韓國租稅學會, 1989, 5권
8. 우제룡, 김도현, “讓渡所得稅의 實務”, 租稅 通覽社, 1992
9. 윤건영, “金融實名制下的 稅制發展과 金融產業의 對應”, 大宇 經濟研究所, 1990
10. 윤계섭, “資本利得稅의 導入에 관한 研究”, 韓國稅務學會, 1990
11. 이필우, 최영한, 조정흠, “韓國租稅의 理解”, 稅學社, 1995
12. 최명근, “韓國租稅의 諸問題”, 租稅 通覽社, 1991
13. 財政經濟院, “金融實名制 2年의 評價와 課題”, 1995
14. 稅制發展 審議委員會 總括制度研究 分科委員會, “韓國稅制의 基本課題”, 1985
15. 韓國 公認會計士會, 『公認會計士』, 1995年 11月號

2. 外國文獻

1. Auten, Gerald E. and Charles T. Clotfelter, “Permanant Versus Transitory Tax Effects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v. 1982
2. Balcer, Yves,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Samuelson’s Fundamental Principle”, Public Finance, Jan. 1983
3. Kotlarsky, Mark, “Capital Gains and Tax Policy”, Tax Notes, Oct. 17, 1988
4. Lindsey, L. B., “Capital Gains Taxes under the Tax Reform Act of 1986: Revenue Estimates under Various Assumptions”, National Tax Journal, 1987, pp. 489-504
5. Meade, Janet A., “The Impact of Different Capital Gains Tax Regimes on the lock-in effect and New Risky Investment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90

6. Minarik, Joseph Jo, "Capital Gains", from "How Taxes Affect Economic Behavior", Henry J. Aaron & Joseph A. Pechman(eds) Brookings Inst, 1981, p. 269.
7. Ricketts, R. C, "Do We Really Need Special Tax Relief for Capital Gain?", Accounting Horizons, Vol. 4, No. 3: 43-49, 1990
8. Stiglitz, J. E, "Some Aspects of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1, 1983, pp. 257-294
9. Whiteman, Peter G, "Capital Gain Tax", London: Sweet & Maxsell, 1980
10. 大韓民國 經濟企劃院, 『中華民國 土地 及 家屋稅 法規』, 1983
11. 佐藤進 外 3, "歐美諸國の土地課税", 東京: 日本住宅総合センター, 1981